
Policy and Law Report _Vol.15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9.13.~ 2022.09.18.) -

September 20,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과학 기술정보 통신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활력 제고 모색</u> - <u>제1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개최</u> <p>데이터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 혁신에 대한 산업현장의 오랜 염원을 담아 지난 10월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새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반으로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9/14(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함</p> <p>동 회의에서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1호 안건)'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추진방향(2호 안건)' 등이 중점 논의됨</p> <p>우선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으로는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하기로 한 바,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가명 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개인행정정보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 (추가지정) ②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③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 ④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 ⑥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⑦ 무인기·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신설 ⑧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p>다음으로 확장가상세계·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p>	<p>2022-09-14</p>

부처	내용	일시
<p>과학 기술정보 통신부</p>	<p>⑨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확장가상세계 구분 등을 위한 지침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p> <p>-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에 위한 확장가상세계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한편, 확장가상세계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 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확장가상세계 특별법,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p> <p>⑩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 허용</p> <p>⑪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p> <p>⑫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 추진</p> <p>⑬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 신속히 시행</p> <p>정부 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간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p> <p>구체적으로 ▲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기업·인력 기술 등 데이터산업 기초체력 강화라는 중점 목표 아래, 정부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들을 마련하고 이행할 계획임</p> <p>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하여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이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연내 확정·발표 예정임</p>	<p>2022-09-14</p>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p>• 새정부 첫 권역별 투자활성화 방안 논의 - 산업부-부울경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 개최</p> <p>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울산·경남의 부단체장 및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과 함께 새정부 첫 권역별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함</p> <p>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 지역의 기업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이번 부울경에 이어 전라권, 충청권, 대경권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임</p> <p>주요 논의 내용으로는</p> <p>① 지방투자보조금의 평가 제도 개선 (경남·부산)</p> <p>(건의사항) 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지방투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계획 평가와 함께 부채, 영업이익 등 재무건전성 등의 사업실적 평가를 받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은 재무건전성 등에 문제가 있어 지역투자 보조금 신청에 어려움 ⇒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내외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로 경영상 애로를 겪은 기업은 투자 계획 평가만으로도 지방투자보조금 신청 가능토록 개선</p> <p>(건의사항) 지역투자 보조금 신청시 우대를 받는 지역특성화업종(유치희망업종) 선정에 지자체의 의견 반영을 확대할 필요 ⇒ 지역특성화업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22년 中 관련 고시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p> <p>②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등 (울산·부산)</p> <p>(건의사항) 신산업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가 부족한 상태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추가 지정*을 요청 *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부산 도심형 경제자유구역, 제2 울산자유무역지역 ⇒ 지자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경자구역 등의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p>	2022-09-14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p>③ 경제자유구역 관련 지자체 자율권 확대 부여 (부산)</p> <p>(건의사항)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등에 지자체 자율권 확대 요청 ⇒ 중요한 변경사항 외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금년내 경자구역법 개정안 마련 추진</p> <p>④ 현대차 전기차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 (울산)</p> <p>(건의사항) 현대차가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을 울산에 신설(약 2조 투자, '23~'25) 예정임에 따라 전용공장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 요청 ⇒ 신청시 지정을 적극 검토</p> <p>⑤ 마산자유무역지역(126개사 입주) 산업단지 지위 부여 (경남)</p> <p>(건의사항)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단지에 부여되는 건폐율 특례(70%→80%)와 지원사업(산단구조고도화 사업 등)에서 배제되어 증설 투자가 제한되고 노후화가 가속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산업단지 지위로 인정 요청 *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년 수출자유지역법에 의거 최초 지정된 수출자유지역(現 자유무역지역) 이나,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는 아님 ⇒ 산업단지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p> <p>⑥ 신축건물 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기준 개선 (부산)</p> <p>(건의사항) 현재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는 건물 준공 후 발전허가를 받은 설비에만 적용됨에 따라, 신축 중인 건물의 경우는 가중치를 받기 위해 준공 후로 발전설비 설치가 늦춰지고 공사비가 추가로 드는 비효율 발생 ⇒ 산업단지 등 관련법에 의거 건축물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에 한정하여 신축건물 준공전 발전허가 받은 설비에도 건축물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기준 완화 검토 ('22년 下~) ⇒ 모든 지역 신축건물 적용은 가중치만을 목적으로 한 편법 건축물 양산 가능성이 있어 수용이 어려움</p>	2022-09-14

부처	내용	일시
<p>식품 의약품 안전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p>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함</p> <p>*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31.1.1 시행)</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② 소비기한 설정방법 ③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선(先)적용 허용, '유통기한' 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토록 계도기간('23.1.1~12.31) 부여 등 	<p>2022-09-16</p>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일부개정」(2022.9.18. 시행) <p>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형성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p>	2022-09-15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9.14. 시행. 다만,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제30조의2, 제32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3.15. 시행 예정) <p>의료기관의 개설신고나 개설허가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면허증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을 종전에는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수와 관계없이 해당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 예방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p> <p>의료인 등은 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수 없으나, 이를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 등을 받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연구용 의약품 및 연구비를 추가하는 한편,</p> <p>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기준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명확히 하고,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09-1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9.16. 시행) <p>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해서도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요청,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화시스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p> <p>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규제는 부실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향후 추가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많지 않아 해당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09-16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공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자 등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요건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중 무선 충전기를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동형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종전 4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기술 발달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제조업자 등의 설비규격 요건 완화 (안 [별표 3]) -전기자동차 충전기 또는 전력량계를 제조하려는 자가 계량기 제조업 등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전압·전류 기준이 높아 창업 등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실제 제조하려는 제품에 맞는 전압·전류의 검사설비만 갖추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p> <p>②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기를 규제 범위에서 제외 (안 [별표 7]) -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유선·무선 관계없이 모두 형식승인 대상이나, 무선 충전기는 관련 기술과 상거래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산업 발전 유도를 위해 우선 규제 범위에서 제외 (향후 기술·시장 성숙 상황에 따라 필요시 규제 범위 재포함 검토)</p>	2022-09-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③ 형식승인·검정요원의 자격요건 명확화 (안 [별표 8])</p> <p>- 형식승인·검정요원의 자격요건 중 자격·학력과 실무경력 등 복수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현행 운영례와 같이 자격·학력 취득 후의 경력을 인정토록 명확히 함</p> <p>④ 형식승인기관 등의 설비규격 요건 보완 (안 [별표 9])</p> <p>- 초급속 충전기 등장에 따라 1,000V급 제품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2020.2월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017호), 이를 시험하고 인증하여야 할 형식승인기관 등의 설비규격 요건도 같은 기준으로 상향</p> <p>⑤ 이동형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완화 (안 [별표 13])</p> <p>- 전기자동차 충전기 중 이동형 충전기는 운반시 진동·충격 등을 고려하여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고정형 충전기보다 적은 4년으로 하였으나, 최근 시행한 이동형 충전기 내구성 시험 결과 10년 이상 고장이 없었음에 따라 불필요한 차별 규제로 판단. 이에 이동형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고정형 충전기와 같은 7년으로 완화하고자 함</p> <p>⑥ 계량기 재검정 유효기간 산정 기준 개선 (안 [별표 13])</p> <p>- 재검정 유효기간 산정시점을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계량기 사용자들은 재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재검정을 신청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받으면 기존 유효기간이 유지되도록 하여 특정 시기에 재검정 신청이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p> <p>※ 의견 제시기간 : 9/13(화)~10/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가기술표준원(계량측정제도과)로 제출</p>	2022-09-13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현행 비관리대상인 초급속(200kVA 초과) 전기차 충전기가 출시·설치됨에 따라 관리대상 용량을 확대(200kVA 이하→500kVA 이하)하여 안전관리 필요하고, 관리대상 범위 용어가 정격입력 또는 정격출력인지 모호한 '정격용량'인 제품(변압기, 전력변환장치, 전기차충전기 등)들에 대한 의미 명확화 필요 및 DC 42V이하 온열제품(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 등)의 관리대상 수준 조정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필요</p> <p>주요 내용으로는</p>	2022-09-1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①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 (정격입력 200kVA → 정격출력 500kVA, 안 [별표1], [별표4])</p> <p>② 관리대상 범위 용어 자구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 - 제품의 성격이 전원공급인 품목(변압기, 전력변환장치, 전기차충전기 등)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일괄 자구 수정 ('정격용량' → '정격출력', 안 [별표1], [별표3], [별표4], [별표13])</p> <p>③ 안전관리수준 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 직류전원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에서 삭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에 추가 (안 [별표4], [별표5], [별표13])</p> <p>※ 의견 제시기간 : 9/16(금)~11/16(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p>	2022-09-16
해양 수산부	<p>•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국내 소비량과 해외 수입량이 많은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5종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만 하는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해당 수산물로 조리된 음식 구매 시 식재료의 원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고,</p> <p>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의 우려가 높으므로 가리비 등 5종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여건을 확립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신규품목 추가 (안 제3조 제5항 제8호) -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5종을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신규품목으로 추가 * (기존) 넙치·조피볼락 등 15종 → (확대) 가리비·우렁쉥이 등 20종 (+5)</p> <p>※ 의견 제시기간 : 9/13(화)~10/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양수산부(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로 제출</p>	2022-09-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해양 수산부	<p>•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p> <p>검수사·감정사·검량사 등 자격시험 출제범위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국제협약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의 항만 현장의 필요한 내용 등을 추가하여 검수사 등의 자격을 획득한 전문인력이 수출입 화물의 정확한 계산, 상태 확인 및 인수·인도의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를 개선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검수사 등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조정 (안 별표 1 개정)</p> <p>- 현행 검수사 등의 시험 출제범위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액화천연가스(LNG)로 추진되는 선박의 운항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 수정 및 현장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함</p> <p>※ 의견 제시기간 : 9/13(화)~10/4(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로 제출</p>	2022-09-13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정무위원회	<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음</p> <p>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p> <p>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거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p> <p>또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현행법에서도 가맹사업자단체와 유사하게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41조의2 신설 등)</p>	2022-09-15
기획재정위원회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p> <p>그런데 도서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및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현행 문화접대비 손금 산입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36조제3항)</p>	2022-09-1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p>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등 14인)」 </p> <p>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p> <p>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p> <p>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p> <p>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34조의 3 신설 등) </p>	2022-09-08
	<p>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등 10인)」 </p> <p>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어 특정인에 대한 집단적 공격을 유도하거나, 메신저 대화방이나 SNS 메시지를 통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등의 사이버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p> <p> 그런데 사이버폭력이 청소년과 성인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주로 자력구제에 의존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조력을 받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p> <p> 이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p> <p> 주요 내용으로는 </p>	2022-09-0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조의4)</p> <p>②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사이버폭력정보를 추가함 (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p> <p>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업무에 사이버폭력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44조의10제1항)</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이버폭력정보의 게재 또는 유통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 (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6호의2 신설)</p>	2022-09-08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p>•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u>」</p> <p>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괴롭힘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사이버 괴롭힘 정보를 추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제1항, 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등)</p>	2022-09-0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p>	<p>•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1인)」</p> <p>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 탄소 중립 등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향후에도 공급망 교란 요인이 지속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p> <p>현행법이 전면개정된 2019년 이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고, 기획-기술개발-실증·양산테스트-생산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는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을 확보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가 있었음</p> <p>그러나,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산업 생산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선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제도는 정비되어 있지 않아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p> <p>이에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공급망안정품목, 공급망안정사업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대함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p>2022-09-08</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검토와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본방향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안 제8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12조의2 신설) ⑥ 인수·합병 등의 지원 목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공급망안정 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인수·합병 등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2항) ⑦ 비상시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을 통해 국외기업과 인수·합병 등을 한 기업에 대한 해외생산품목의 국내 반입명령 근거를 신설함 (안 제21조의2 신설) ⑧ 세제지원의 범위를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대함 (안 제23조) ⑨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함 (안 제23조의2 신설) ⑩ 공급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급망센터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 (안 제23조의3 신설) ⑪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사업의 발굴·지원과 공급망안정사업 참여 기업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23조의4 신설) ⑫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지원, 민간비축 지원, 국내 생산기반 확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23조의5부터 제23조의7 신설) ⑬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대함 (안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항제6호의2 신설) ⑭ 공급망안정사업 참여 기업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51조제 1항) ⑮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 (안 제61조) 	2022- 09-08

부처	내용	일시
	<p>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제 특례 근거를 마련함 (안 제64조부터 제67조)</p> <p>⑪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근거를 신설함 (안 제76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항 신설)</p> <p>⑫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신설함 (안 제77조)</p>	2022-09-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등 10인)</u>」</p> <p>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보급 물량,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p> <p>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p> <p>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등록 현황을 보면,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 전기자동차 약 23만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가 등록되었고, 2022년 5월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1,319기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급속충전기 16,379기, 완속충전기 114,940기가 설치되었음</p> <p>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p> <p>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추진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및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11조의2제1항 후단 각각 신설)</p>	2022-09-15

부처	내용	일시
환경노동 위원회	<p>• 「생활임금법안(신영대의원 등 11인)」</p> <p>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생계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음</p> <p>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에 따라 생활임금의 도입여부 및 그 지급 수준에 격차가 큰 실정임. 이는 지역 근로자간 임금 격차의 문제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임</p> <p>이에 생활임금의 결정방식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하나의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현실적인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정적인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공무원 보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와 그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근로자로 규정함 (안 제3조)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국가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액 및 그 적용대상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안 제4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공공계약 공고시 생활임금액과 그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2022-09-13

부처	내용	일시
환경노동위원회	<p>⑤ 고용노동부에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가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에 따라 지역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7조 및 제8조)</p>	2022-09-13
	<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등 56인)」</p> <p>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p> <p>아울러,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p> <p>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 (안 제2조제1호)</p> <p>②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2조제2호)</p>	2022-09-14

부처	내용	일시
환경노동 위원회	<p>③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 (안 제2조제5호)</p> <p>④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 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p> <p>⑤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p> <p>⑥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수·조합비·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신설)</p> <p>⑦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3 신설)</p>	2022-09-14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9/19(월) 14:00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정치)	
	9/20(화) 14:00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9/21(수) 14:00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경제)	
	9/22(목) 14:00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9/20(화) 10:00	「2022년도 제3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경기도 안성시)」 개최 - 경기 동·남부권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규제 재정비	
국회도서관	9/2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4호 발간 - 일본의 소유자불명토지 이용에 관한 입법례	
	9/20(화)	「현안, 외국에선?」 제44호 발간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9/23(금)	「최신정책정보:국내」 제101호 발간 - 최근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평가 등	
입법조사처	주중	「이슈와 논점」 발간 - 국회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9/22(목) ~ 9/23(금)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 연속간담회 (3차, 4차) 개최 - 미국의 패권 전략(3차), 유럽의 입장과 전략(4차)	세미나실
예산정책처	9/20(화)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발간	

[별첨1] 제400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9/22(목) 10:00	법안1소위	- 법률안 심사(민법)
교육위	9/21(수) 10:00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법안심사소위 의결 법안 -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과방위	9/20(화) 09:30	전체회의	- 2021회계연도 결산 의결 -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공청회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외통위	9/22(목) 13:30	전체회의	-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국방위	9/19(월) 09:30	전체회의	-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법률안 및 결의안 등 - 정책질의
행안위	9/20(화) 09:00	법안심사소위	- 법률안 심사
	9/21(수) 09:00	법안심사소위	- 법률안 심사
	9/22(목) 10:00	전체회의	- 법률안 의결 -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문체위	9/20(화) 10:00	전체회의	-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법률안 상정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농해수위	9/19(월) 10:00	농림법안소위	- 법률안 심사
	9/20(화) 10:00	전체회의	-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법률안 의결
산자위	9/19(월) 09:00	전체회의	- 법률안 상정
	9/20(화) 10:00	산자특허소위	- 법률안 심의
	9/21(수) 10:00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률안 심의
	9/22(목) 07:30	간담회	- 위원회 주관 조찬간담회(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 혁신전략 : 디지털, 그린, 공급망)
	9/22(목) 10:00	전체회의	- 법률안 의결 -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복지위	9/19(월) 11:00	전체회의	-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 요구·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9/20(화) 08:30	전체회의	- 현장시찰(국립재활원)
국토위	9/20(화) 10:00	전체회의	-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증인 출석 요구 등 의결 - 법률안 등 상정
	9/21(수) 10:00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률안 심사
	9/22(목) 10:00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률안 심사
	9/23(금) 10:00	전체회의	- 법률안 의결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여가위	9/20(화) 09:30	전체회의	- 스톡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 등
예결위	9/20(화) 10:00	결산심사소위	-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9/21(수) 10:00	결산심사소위	-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19(월) 10:00	문화예술 노동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류호정·이은주 의원실, 문화예술노동연대	의원회관 9간담회실
9/19(월) 10:00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김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9/19(월) 14:00	가상자산 ICO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민병덕 의원실, 블록미디어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9(월) 15:30	NBS(자연기반해법) 및 TNFD(자연기반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유의동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20(화) 07:30	한미 경제안보동맹 이대로 좋은가?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과 대응	윤관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20(화) 10:00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	송언석 의원실, (사)한국기업법연구소	의원회관 2소회의실
9/20(화) 10:00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	조정훈·이탄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20(화) 11:00	2022 국가브랜드 컨퍼런스	이용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회실
9/20(화) 14:00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향 토론회	조명희·변재일 의원실, 국회ICT융합포럼	의원회관 2세미나실
9/20(화) 14:00	국회물포럼 제18차 대토론회 - 초순수산업 육성 정책 세미나	변재일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9/20(화) 14:00	원전, 유럽 에너지 위기 극복의 대안인가?	김성환·이동주 의원실	의원회관 306호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21(수) 09:30	K-반도체 대전환 방향설정과 미래전략 국회 세미나	최형두·박성민· 조응천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9/21(수) 10:00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大토론회	김기현 의원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9/21(수) 10:00	스마트 농업과 연계한 수소산업 추진방안	이철규·이용빈· 정희용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9/21(수) 11:00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9/21(수) 13:30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활용처 모색 정책토론회	한무경·정운천· 구자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9/22(목) 10:00	원전 강국을 위한 원전해체 산업 현황과 향후 과제	박완주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9/22(목) 13:30	국가 미래 혁신기술 산업 인력양성 방안 마련 토론회	박대수·윤영찬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9/23(금) 10:00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윤두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23(금) 15:0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 - 현행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태경 의원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52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입법조사처	주중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 발간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14(화) 14:00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9/15(목) 09:30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식량안보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은?	임이자·정희용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최유리** | 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